



제439회 국회 (정기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미성년자 대상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등〉

■ 박균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7268호)

2026. 9.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전문위원 최 기 도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1. 19세 미만자 대상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준수사항 신설	3
2. 준수사항 부과 규정 신설	9
3. 보호관찰소와 수사기관 간 정보공유 근거 신설	1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박균택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6. 3. 5.
3. 회 부 일 : 2026. 3. 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5년 12월 발생한 창원 모텔 살인사건은 SNS를 통해 알게 된 여중생을 모텔로 유인한 후 함께 따라온 친구를 포함하여 살해 및 중상을 입힌 범죄로 최근 SNS 등을 매개로 아동·청소년 대상 유인형 성범죄가 지능화되면서 국민적 불안감이 고조되고, 재범 우려가 있는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선제적 관리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SNS 등을 이용한 범죄 유형의 대상자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준수사항 규정이 미비하고, 준수사항 추가 등 신청 요건이 엄격하여 재범방지를 위한 활용에 어려움이 있으며 또한,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보호관찰 대상자임을 인지하더라도 보호관찰소에 이를 통보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기관 간 정보공유에 공백이 있음.

이에 SNS를 통한 아동·청소년 대상 유인형 성범죄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준수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보호관찰 대상자의 성향, 심신의 상태, 환경 등에 비추어 재범 방지에 특별히 필요한 경우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준수사항 부과, 추가 등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보호관찰소와 경찰 간 정보공유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2조 등).

III. 검토의견

1. 미성년자 대상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준수사항 신설

- 개정안은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 특별준수사항에 미성년자에 대하여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것을 금지하고, 그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한 보호관찰관의 디지털 분석 등 검사에 따르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3항제10호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32조(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 ① · ② (생략) ③ 법원 및 심사위원회는 판결의 선고 또는 결정의 고지를 할 때에는 제2항의 준수사항 외에 범죄의 내용과 종류 및 본인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면 보호관찰 기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특별히 지켜야 할 사항으로 따로 과(科)할 수 있다. 1. ~ 9. (생략) <u><신설></u>	제32조(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 ----- ----- ----- --. 1. ~ 9. (현행과 같음) <u>10.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u>

현행	개정안
10. (생략)	<u>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금지하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을 위한 보호관찰관의 디지털 분석 등 검사에 따를 것</u> 11. (현행 제10호와 같음)

□ 현행법은 판결의 선고 또는 결정의 고지와 함께 부과할 수 있는 준수사항으로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 특정지역·장소에의 출입금지 및 접근금지, 거주장소의 제한, 피해자 등 특정인에의 접근금지, 마약 등 중독성 있는 물질의 사용금지 및 그 밖에 재범 방지와 성행교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¹⁾

□ 개정안은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미성년자 대상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및 그 이행여부 확인을 위한 디지털 분석 등 검사준수 사항의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보호관찰 대상자가 온라인을

1) 제32조(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 ③ 법원 및 심사위원회는 판결의 선고 또는 결정의 고지를 할 때에는 제2항의 준수사항 외에 범죄의 내용과 종류 및 본인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면 보호관찰 기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특별히 지켜야 할 사항으로 따로 과(科)할 수 있다.

1. 야간 등 재범의 기회나 충동을 줄 수 있는 특정 시간대의 외출 제한
2. 재범의 기회나 충동을 줄 수 있는 특정 지역·장소의 출입 금지
3. 피해자 등 재범의 대상이 될 우려가 있는 특정인에 대한 접근 금지
4. 범죄행위로 인한 손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
5. 일정한 주거가 없는 자에 대한 거주장소 제한
6. 사행행위에 빠지지 아니할 것
7. 일정량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 것
8. 마약 등 중독성 있는 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9.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마약류 투약, 흡연, 섭취 여부에 관한 검사에 따를 것
10. 그 밖에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용하여 미성년자에게 접근한 후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으로 그 입법취지를 이해할 수 있음.²⁾

- 2025년 미성년 대상 성폭력 재범 중 SNS 등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미성년자를 유인·접근한 후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보호관찰 대상자에서는 102건 중 36건(35.3%), 전자감독대상자의 동종 재범에서는 6건 중 3건(50%)으로 나타났다.

〈2025년 미성년자 대상 전기통신 이용 유인형 성폭력 재범 현황〉

(단위 : 건, 2025년 기준)

구분	미성년 대상 성폭력 재범	SNS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미성년자 유인·접근 후 성폭력 재범
보호관찰	102 (100%)	36 (35.3%)
전자감독	6* (100%)	3 (50%)

* 전자감독은 동종 재범 건수

자료 : 법무부

- 현행법 하에서도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포괄적 준수사항을 근거로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전자기기를 보호관찰관에게 보고하고, 채팅앱 설치 여부나 아동·청소년과의 접촉 여부 등을 점검하기 위한 디지털 분석 등에 응하도록 하는 준수사항이 실무상 부과되고 있으며³⁾, 디지털 분석 수검 준수사항 부과자는 2022년 2명에서 2026년 3월 169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2) 2025년 여성가족부의 발표에 따르면, 2023년도 성범죄 피해 아동·청소년이 가해자를 ‘인터넷 채팅 등을 통해 알게 된’ 경우가 36.1%로 가장 많았음. (성평등가족부 아동청소년보호과,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증가, 처벌도 강화 추세’, 정책뉴스, 25.4.30.)

3) ‘본인이 소유한 PC, 휴대폰, 태블릿 등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일체의 전자통신기기를 보호관찰 관에게 보고하고, 정기적(최소 6개월에 1회)으로 채팅앱 설치 여부 및 여성 아동·청소년과의 접촉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보호관찰관의 디지털 분석 등 과학적 검사에 응할 것’과 같이 부과하고 있음.

〈2022년~2026년 디지털분석 수검 준수사항 부과자 현황〉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3.
보호관찰	2	22	78	148	169

자료 : 법무부

○ 개정안은 현재 포괄적 준수사항을 근거로 운용되고 있는 온라인 접촉 제한 및 디지털 분석 수검의무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피부착자 또는 보호관찰대상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집행의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하게 하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입법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 개정안의 입법취지와 함께 전기통신 이용 ‘접근’ 개념의 명확성과 디지털 분석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첫째, 안 제32조제3항제10호의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이라는 표현은 그 적용범위가 다소 포괄적이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는 “전기통신”을 유선·무선·광선 및 그 밖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으로 폭넓게 정의하고 있으므로⁴⁾, SNS나 메신저뿐만 아니라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온라인

4)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기통신”이라 함은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을 말한다.

커뮤니티, 온라인 게임상 채팅 등 다양한 형태의 전자적 의사소통이 이에 포함될 수 있음.

- 그런데 개정안은 이러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어떠한 행위가 금지되는 ‘접근’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단순히 동일한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참여하는 경우, 게시글이나 댓글을 열람하는 경우 또는 19세 미만자가 먼저 연락하여 이에 응답한 경우 등이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 둘째, 디지털 분석 등 검사수인의무는 휴대전화·PC 등에 저장된 광범위한 전자정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부착자 등의 사생활의 비밀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뿐만 아니라 그와 연락한 제3자의 통신 및 개인정보까지 제한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휴대전화에는 문자메시지, 사진·동영상, 통화내역, SNS 콘텐츠 및 친구목록 등 개인의 일상생활에 관한 정보가 광범위하게 저장되어 있고, SNS 등을 통해 연결된 제3자의 정보도 포함될 수 있음. 따라서 휴대전화에 대한 전자정보 수집은 이용자뿐만 아니라 SNS 등으로 연결된 제3자의 사생활의 비밀·평온, 통신의 자유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을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음.⁵⁾

5) 사법연수원, 법원실무제요 형사III, p291

2. 준수사항의 부과·추가·변경 등 요건 완화

□ 개정안은 보호관찰 대상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사정변경의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법원 또는 심사위원회가 준수사항을 “추가, 변경하거나 삭제”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제32조제4항에 “부과”를 추가하는 한편, 보호관찰 대상자의 성향·심신의 상태·환경 등에 비추어 재범 방지에 특별히 필요한 경우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제4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준수사항을 부과·추가·변경하거나 삭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4항 등).

현행	개정안
제32조(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 사항) ① ~ ③ (생략) ④ 보호관찰 대상자가 제2항 또는 제3항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사정변경의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심사위원회는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에 따라 각각 준수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u>추가, 변경하거나 삭제할 수 있다.</u> <u><신설></u>	제32조(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 사항)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 ----- ----- ----- ----- ----- ----- -----부과, 추가, 변경하거나 <u>삭제</u> -----. ⑤ 제4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현행	개정안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준수사항은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u>도 법원은 보호관찰 대상자의 성향, 심신의 상태, 환경 등에 비추어 재범 방지에 특별히 필요한 경우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심사위원회는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에 따라 준수사항을 부과, 추가, 변경하거나 삭제할 수 있다.</u> ⑥ -----제5항----- ----- -----.

□ 현행법은 보호관찰 대상자가 일반·특별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사정변경의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법원 또는 심사위원회가 준수사항을 추가·변경·삭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는 보호관찰 집행 과정에서 대상자의 상황이나 재범위험성이 달라지는 경우 준수사항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제도임.

□ 개정안은 준수사항의 부과·추가·변경 또는 삭제가 가능한 경우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개정안 제32조제4항과 신설되는 같은 조 제5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음.

○ (제4항) 현행법은 보호관찰 대상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사정변경의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법원 또는 심사위원회가 준수사항을 “추가, 변경하거나 삭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여기에 “부과”를 추가하여 보호관찰 명령 당시 해당 준수사항이 부과되지 않았더라도 이후 새로운 준수사항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제5항) 또한 개정안은 제4항에 규정된 경우 외에도 보호관찰 대상자의 성향, 심신의 상태, 환경 등에 비추어 재범 방지에 특별히 필요한 경우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법원 또는 심사위원회가 준수사항을 부과·추가·변경하거나 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 개정안 제32조제4항은 보호관찰 명령 당시에는 예상하거나 고려하지 못하였던 사정이 이후 발생한 경우에도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 위험성 등에 맞추어 새로운 준수사항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호관찰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음.

○ 현행 규정은 준수사항의 “추가”만 규정하고 있어 판결 또는 결정 당시 특별준수사항이 전혀 부과되지 않은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이후 새로운 준수사항을 최초로 부과할 수 있는지가 문언상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실제로 전자장치 부착명령 등의

선고 당시에는 부과되지 않았던 준수사항과 관련된 범죄행위가 이후 발생하여 준수사항을 추가한 사례가 있는바, 최초 보호관찰 명령 당시 준수사항을 부과하지 않았더라도 이후 대상자의 품행이나 성향 등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준수사항을 부과할 필요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의 필요성이 긍정됨.⁶⁾

- 동일한 내용으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은 사정변경 시 준수사항을 “추가, 변경 또는 삭제”할 수 있도록 하던 규정을 2020년 개정하면서 “부과, 추가, 변경 또는 삭제”로 정비하였고⁷⁾, 판결 당시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사정이 나타나는 경우 형기를 마치기 전에도 피부착명령자에게 준수사항을 부과·추가·변경·삭제할 수 있도록 제14조의3을 신설한 바 있음.⁸⁾ 당시 개정은 준수사항이 당초 부과되지 않은 경우에도 사후에 이를 새롭게 부과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출소 전 단계에서도 새로운 재범위험성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였음.⁹⁾

□ 다만, 신설되는 제5항은 개정안 제4항과 그 적용범위가 상당 부분

6) 서울고등법원 2020. 7. 15.자 2020로52 결정

7)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부착기간의 연장 등)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 외의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에 따른 검사의 청구로 제9조의2제1항의 준수사항을 부과, 추가, 변경 또는 삭제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8)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피부착명령자에 대한 준수사항의 부과 등) 피부착명령자의 재범의 위험성에 관하여 행형(行刑) 성적 등 자료에 의해 판결 선고 당시에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사정이 소명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법원은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에 따른 검사의 청구로 제9조의2제1항의 준수사항을 부과, 추가, 변경 또는 삭제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9)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안번호: 2104377

중복된다는 점에서 별도의 규정을 둘 입법 실익이 크지 않은 측면이 있음.

- 제5항이 규정하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성향, 심신의 상태, 환경” 등에 관한 사정은 보호관찰 기간 중 변화가 발생한 경우 상당 부분 제4항의 “사정변경의 상당한 이유”에 포함될 수 있고, 개정안 제4항에 따라 새로운 준수사항의 “부과”까지 가능하게 되므로 제5항이 예정하는 경우의 상당 부분은 제4항에 의해서도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특히 제4항과 제5항은 신청·청구 주체와 결정 주체가 동일하고, 가능한 조치 역시 준수사항의 부과·추가·변경·삭제로 동일한 반면, 그 요건만 유사하게 달리 규정하고 있어 양 항의 적용 관계가 불분명해질 가능성도 있음.

3. 보호관찰소와 수사기관 간 정보공유 근거 신설

- 개정안은 보호관찰소의 장이 범죄예방 및 수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호관찰 대상자의 신상정보 및 지도·감독 중 알게 된 사실 등의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수사기관도 보호관찰 대상자의 지도·감독에 활용할 만한 자료를 보호관찰소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양 기관 간 정보공유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u><신설></u>	제37조의2(보호관찰 대상자의 신상정보 제공 등) ① 보호관찰소의 장은 범죄예방 및 수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호관찰 대상자가 제29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신상정보 및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지도·감독 중 알게 된 사실 등의 자료를 보호관찰 대상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 등 수사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② 수사기관은 범죄예방 및 수사활동 중 인지한 사실이 보호관찰 대상자 지도·감독에 활

현행	개정안
	<u>용할 만한 자료라고 판단할 경우 이를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u> <u>③ 보호관찰소의 장은 보호관찰 대상자가 범죄를 저질렀거나 저질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수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u> <u>④ 수사기관은 체포 또는 구속한 사람이 보호관찰 대상자임을 알게 된 경우에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u> <u>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제공 및 통보의 절차와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 현행법은 보호관찰소의 장이 보호관찰에 필요한 경우 국공립기관 등에 사실 확인이나 자료열람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¹⁰⁾,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의 보호관찰 종료사실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¹¹⁾

10) 제37조(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조사) ② 보호관찰소의 장은 보호관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공립기관이나 그 밖의 단체에 사실을 알아보거나 관련 자료의 열람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는 피부착자에 대하여 보호관찰소와 수사기관 간 신상정보 및 지도·감독 관련 자료의 상호 제공, 범죄혐의 및 체포·구속 사실의 상호 통보 근거를 두고 있음.¹²⁾

□ 개정안은 보호관찰 대상자의 새로운 범죄나 재범위험에 관한 정보를 보호관찰소와 수사기관이 신속하게 공유함으로써 보호관찰의 실효성을 높이고 재범을 방지하려는 점에서 입법취지를 이해할 수 있음.

□ 다만, 개정안의 입법취지와 함께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정보제공 요건 및 제공대상 정보 범위의 포괄성, 보호관찰 대상자에 관한 일률적인 정보공유의 적정성, 현행 비밀유지·인권보호·사회복귀 원칙과의 조화 필요성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11) 제36조의2(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의 치료 등을 위한 협력) ② 보호관찰소의 장은 제1항의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의 보호관찰이 종료되는 때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종료사실을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통보하는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 통보 방법 및 통보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2)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피부착자의 신상정보 제공 등) ① 보호관찰소의 장은 범죄예방 및 수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피부착자가 제14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신상정보 및 피부착자에 대한 지도·감독 중 알게 된 사실 등의 자료를 피부착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 등 수사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② 수사기관은 범죄예방 및 수사활동 중 인지한 사실이 피부착자 지도·감독에 활용할 만한 자료라고 판단할 경우 이를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③ 보호관찰소의 장은 피부착자가 범죄를 저질렀거나 저질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수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수사기관은 체포 또는 구속한 사람이 피부착자임을 알게 된 경우에는 피부착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에 따른 제공 및 통보의 절차와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첫째, 안 제37조의2제1항은 보호관찰소의 장이 “범죄예방 및 수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대상자의 신상정보뿐만 아니라 “지도·감독 중 알게 된 사실 등의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제공요건과 정보의 범위가 다소 포괄적이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보호관찰관은 지도·감독 과정에서 대상자의 가족관계, 교우관계, 직업·생활상태 등 다양한 정보를 취득할 수 있으므로, “지도·감독 중 알게 된 사실 등의 자료”를 별도의 제한 없이 수사기관에 제공할 경우 범죄예방 또는 수사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낮은 개인정보까지 제공될 가능성이 있음.

□ 둘째, 개정안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상 피부착자 등에 대하여 적용되고 있는 정보공유제도와 유사한 내용을 보호관찰 대상자에게도 적용하려는 것인데, 현행법에 따른 보호관찰 대상자는 선고유예·집행유예·가석방 대상자뿐만 아니라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 등 보호관찰의 법적 근거와 범죄의 종류·중대성, 연령 및 재범위험성 등이 다양한 사람을 포괄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¹³⁾

13) 제3조(대상자) ① 보호관찰을 받을 사람(이하 “보호관찰 대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형법」 제59조의2에 따라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
2. 「형법」 제62조의2에 따라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
3. 「형법」 제73조의2 또는 이 법 제25조에 따라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가석방되거나 임시퇴원된 사람
4. 「소년법」 제3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

○ 특히 개정안은 이러한 대상자의 차이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보호관찰소의 장이 “범죄예방 및 수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상정보뿐만 아니라 지도·감독 중 알게 된 사실 등의 자료까지 수사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대상자의 범죄유형·재범위험성 및 제공정보와 범죄예방·수사 목적 간 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정보제공의 범위와 요건을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셋째, 개정안에 따른 정보제공은 현행법이 규정하고 있는 비밀유지 및 인권보호·사회복귀의 원칙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제공대상 정보의 범위와 요건을 적정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음.

○ 현행법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에게 직무상 비밀을 엄수하고, 보호관찰 대상자 및 관계인의 인권을 존중하며, 보호관찰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 복귀에 방해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¹⁴⁾

문 의 처
02-6788-5075

5. 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따른 보호관찰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

14) 제37조(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조사) ③ 제1항과 제2항의 직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직무상 비밀을 엄수하고, 보호관찰 대상자 및 관계인의 인권을 존중하며, 보호관찰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 복귀에 방해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